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44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7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5. 5.26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5. 5.29

4. 상정일자 :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23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5. 6.26)

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¹⁾ (기획조정실장 정상훈)

- 의안번호 제2843호 「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 등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14개 변경 안건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-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회수액을 2025회계연도 예치금으로 증감 반영하는 등 재무활동을 3,855억원 증액 하였으며
- 도시재생기금, 공공시설등설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정책사업비를 1,663억원 증액하고, 행정운영경비를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함

1) 일괄 제안설명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차이가 있음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- 나. 운용규모 : 845,310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297,843백만원 증가)

〈표 2-1〉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<수입계획>				<지출계획>			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-A)	구분	당초 (C)	변경 (D)	증감 (D-C)
합 계	547,467	845,310	297,843	합 계	547,467	845,310	297,843
전 입 금	-	285,367	285,367	재 무 활 동	소 계	547,236	845,045 (증 54.4%)
이자수입	38,568	40,770	2,202		차 입 금 원금상환	414,746	419,746 (증 1.2%)
예 탁 금 원금회수	80,000	80,000	-		차 입 금 이자상환	131,920	2,510 (증 1.9%)
					예 치 금	570	290,299 (증 50929.6%)
예 치 금 회 수	428,899	439,173	10,274	행 정 운 영 경 비	소 계	231	265 (증 14.7%)
					기 본 경 비	231	34 (증 14.7%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전입금 285,367백만원 증가

▶ 전입금 : (당초) 0원 → (변경) 285,367백만원

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9,290억원) 중
법정의무경비(3,583억원)을 공제한 잔액(5,707억원)의 50% 적립

-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,202백만원 증가

▶ 이자수입 : (당초) 38,568백만원 → (변경) 40,770백만원

-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0,274백만원 증가

▶ 예치금회수 : (당초) 428,899백만원 → (변경) 439,173백만원

○ 지출계획 변경

- 공자기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 규모 확대로 차입금 원금상환 5,000백만원
증가

▶ 차입금 원금상환 : (당초) 414,746백만원 → (변경) 419,746백만원

- 모집공채 발행 시기 분산으로 하반기 이자 상환액 2,510백만원 증가

▶ 차입금 이자상환 : (당초) 131,920백만원 → (변경) 134,430백만원

▶ 기본경비 : (당초) 231백만원 → (변경) 265백만원

-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말 예치금이 290,299백
만원 증가

▶ 예치금 : (당초) 570백만원 → (변경) 290,869백만원

3. 검토의견²⁾

-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³⁾는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%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,
-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(9,290억원 2,800만원)중 법정경비⁴⁾를 정산한 순세계잉여금(5,707억 3,400만원)의 50%에 해당하는 2,853억 6,70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이입하고,

〈표 3-1〉 '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

(단위 : 백만원)

결 산 상 세 계 잉 여 금	법 정 정 산 분				순세계잉여금
	소 계	자 치 구 교 부	교 육 청 전 출	타회계전출등	
929,028	358,294	210,352	147,942	-	570,734

- 전입금 수입(순세계잉여금 이입)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증가하여 이자수입을 22억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회수도 102억 7,4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당초보다 2,978억 4,300만원 증액하여 운용하려는 것임

2) ■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■ 증감률 등의 경우,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,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(±0.1% 범위내) 차이 있음

3)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

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이 경우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

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

다.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

4) 법정경비 :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 : 2,103억 5,200만원

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: 1,479억 4,200만원

〈표 3-2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당초계획 (A)	변경(안) (B)	증 · 감 (C=B-A)	증 · 감 사유
수 입 합 계	547,467	845,310	297,843	
전 입 금	-	285,367	285,367	○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(2,853억 6,700만원)
이 자 수 입	38,568	40,770	2,202	○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
예 탁 금	80,000	80,000	-	○변동없음
예 치 금 회 수	428,899	439,173	10,274	○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

○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2,978억 7,300만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으로, ①예치금은 당초계획보다 2,902억 9,900만원 증액하고, ②차입금원금상환을 50억원 증액하고, ③차입금 이자상환도 25억 1,000만원 증액한 것으로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⁵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,

■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(5,472억 3,600만원)보다 54.4%. 2,978억 900만원 증액된 8,450억 4,5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5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- 아울러 지출계획중 정책사업 **행정운영경비**는 당초(2억 3,100만원)보다 14.7%. 3,400만원 증액된 2억 6,5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3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정책사업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 책 사 업 / 단 위 사 업 / 세 부 사 업	당초 (A)	변경내역 (B)	증 ·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 출 합 계	547,467	845,310	297,843	
재 무 활 동	547,236	845,045	297,809	54.4
보 전 지 출	547,236	845,045	297,809	54.4
여 유 자 금 예 치	570	290,869	290,299	50929.6
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	414,746	419,746	5,000	1.2
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	131,920	134,430	2,510	1.9
행 정 운 영 경 비	231	265	34	14.7
기 본 경 비	231	265	34	14.7
기 금 관 리 비	231	265	34	14.7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가. 소위원회

○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
- 위원장 : 최민규(도시안전건설)

- 부위원장 : 김경훈(교육), 정준호(교통)

- 위원 : 서호연(행정자치), 홍국표(기획경제)

이용균(환경수자원), 아이수루(문화체육관광)

도문열(보건복지), 봉양순(도시안전건설)

김종길(주택공간), 김원태(도시계획균형)

※ '2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시 : 2025. 6.26(목) 12:00~13:00

- 장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5. 6.26)

202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8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845,310백만원(당초 계획 대비 297,843백만원 증가)

〈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〉

(단위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< 지출계획 >			
구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-A)	구분	당초 (C)	변경 (D)	증감 (D-C)
계	547,467	845,310	297,843	계	547,467	845,310	297,843
전입금	-	285,367	285,367	재무 활동	소계	547,236	845,045 (증 54.4%)
이자수입	38,568	40,770	2,202		차입금 원금상환	414,746	419,746 (증 1.2%)
예탁금 원금회수	80,000	80,000	-		차입금 이자상환	131,920	134,430 (증 1.9%)
예치금 회수	428,899	439,173	10,274		예치금	570	290,869 (증 50929.6%)
				행정 경비	소계	231	265 (증 14.7%)
					기본경비	231	265 (증 14.7%)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전입금 285,367백만원 증가
 - ▶ 전입금 : (당초) 0원 → (변경) 285,367백만원
 -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9,290억원) 중 법정 의무경비(3,583억원)를 공제한 잔액(5,707억원)의 50% 적립
-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,202백만원 증가
 - ▶ 이자수입 : (당초) 38,568백만원 → (변경) 40,770백만원
-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0,274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회수 : (당초) 428,899백만원 → (변경) 439,173백만원

○ 지출계획 변경

- 공자기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 규모 확대로 차입금 원금상환 5,000백만원 증가
 - ▶ 차입금 원금상환 : (당초) 414,746백만원 → (변경) 419,746백만원
- 모집공채 발행 시기 분산으로 하반기 이자 상환액 2,510백만원 증가 및 기본경비(발행 수수료) 34백만원 증가
 - ▶ 차입금 이자상환 : (당초) 131,920백만원 → (변경) 134,430백만원
 - ▶ 기본경비 : (당초) 231백만원 → (변경) 265백만원
-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말 예치금이 290,299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 : (당초) 570백만원 → (변경) 290,869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6조(보고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 성 자 :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홍서영(☎ 2133-6866)